

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3513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6년 3월 6일

제안자 : 문화체육관광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동 개정안의 목적은 시립체육시설 사용에 있어 청소년의 체육활동 기회를 우선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나,

개정되는 조문의 내용은 시설확대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절하게 수정하고자 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서울시가 청소년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6조 제10호).

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6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0. 청소년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

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16조(생활체육의 진흥) 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 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 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 의 권장·보호 및 육성 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.</p> <p>1. ~ 9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10. (생 략)</p>	<p>제16조(생활체육의 진흥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 음)</p> <p><u>10. 청소년의 체육진 흥을 위한 실내의 시설 지원</u></p> <p>11. (현행 제10호와 같음)</p>	<p>제16조(생활체육의 진흥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 음)</p> <p><u>10. 청소년 체육진 흥을 위한 사업</u></p> <p>11. (현행 제10호와 같음)</p>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청소년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6조(생활체육의 진흥) 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의 권장·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.</p> <p>1. ~ 9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10.</u> (생 략)</p>	<p>제16조(생활체육의 진흥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0. 청소년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</u></p> <p><u>11.</u> (현행 제10호와 같음)</p>